

.0200 장 - 최소관리실천사항

15 NCAC 02S .0201 적용대상

이 장에서 취급되는 조항은 모든 드라이크리닝 업소와 드라이크리닝용 솔벤트 도매점 및 폐쇄시설등에 대하여 드라이크리닝 솔벤트의 보관과 취급을 위한 최소관리실천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장에 포함된 조항은 드라이크리닝 사업장과 드라이크리닝 솔벤트 도매점, 및 폐쇄시설 업주들과 취급종업원들에게 한하여 적용됩니다.

편찬사: Authority G.S. 143-215.104D(b);150B-21.2;

발효일: 2000 년8 월1 일

수정발효일:2002 년8 월1 일

15A NCAC 02S.0202 필요한 최소조치사항

(가) 부 G.S.143-215.104(B0(b)(1) 에 정의된 모든 폐기시설은 이 규정이 발효될때 부터 이 규정의 수조항 (b)(5)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드라이크리닝 업소와 도매점은 이 규정이 발효되면 다음의 최소관리실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어느 때를 막론하고 드라이크리닝 솔벤트, 드라이크리닝 솔벤트 폐기물, 혹은 드라이크리닝 솔벤트가 포함된 물을 주의 토지나 강, 정화하수도, 폭우유수장, 바닥, 부패시설, 보일러용수, 냉각탑, 등에 흘려 내버려서는 안됩니다. 모든 드라이크리닝용 솔벤트의 폐기기록을 유지하여 당국의 조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드라이크리닝업소가 분무기,건조기, 탄소여과기, 혹은 솔벤트가 포함된 다른 폐수처리장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구매, 관리, 수리기록, 및 타 관련 기록을 포함하여 기록보관하고 요청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2002 년 1 월 1 일 까지 폐기물용기를 만들어서 드라이크리닝장비, 여과기, 드라이크리닝 솔벤트 펌프, 증류기, 증발흡수기, 솔벤트 보관장소, 및 폐기솔벤트보관장소등의 아래나 주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용기는 폐기물용기가 설치될 자리에 있는 용기나 탱크 용량의 110 퍼센트의 크기라야 하고, 폐기물용기의 주변에 있어서 72 시간 동안에 흘러 나오는 폐기물을 수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폐기용기의 주변바닥이나 아래에 흘린 것들은 드라이크리닝 솔벤트에 강한 물질을 이용하여 새지 않도록 틀어 막아야 합니다. 또한 비상용 폐기물제거흡수제를 업소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각 업소는 연방정부,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규정대로 비상계획을 만들어 관리실천 하여야 합니다.

(3) 이 규정이 발효된 후에 설치되는 모든 과염화물에틸렌 드라이크리닝 장비는 냉동컨덴서가 장착된 해당 건조 대 건조 과염화물에틸렌 드라이크리닝에 적용되는 공기방출 표준에 적합하거나 그보다 우월하여야 합니다. 모든 과염화물에틸렌 드라이크리닝장치는 EPA 과염화물에틸렌 드라이크리닝장치 NESHAP:40CFR, 63 절, M 항 규정에 적합하여야 인증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4) 과염화물에틸렌 드라이크리닝장치를 한 업소는 폐쇄용기배설시스템을 2002 년 1 월 1 일부터 사용해야 합니다.

(5) 이 규정의 발효일 6 개월 이후에는 드라이크리닝업소는 지하에 솔벤트 혹은 폐기물 저장 탱크를 설치할수 없습니다.

편찬사: Authority G.S. 143-215.104D(b);150B-21.2;

발효일: 2000 년8 월1 일

임시발효일:2001 년6 월1 일

수정발효일:2002 년8 월1 일